

'99 공유재산 관리 계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7일

3. 제안 이유

-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1958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부, 분수계약 체결 관리하여온 분수국유림에 대하여
- 산림청에서 '98년도부터 년차별로 수익분배하는 입목대금 전액으로 도유림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【 재산의 취득 】

- 도유임야 매입 -

- 위 치 : 미선정 (충주, 제천, 괴산, 단양군 등 기존도유림 인근의 사유임야를 매입 집단화)
- 규 모 : 총면적 933ha, '99년도 매입 45ha (추정)
- 시 기 : '99상반기
- 취득가액 : 총 8,400,000천원(추정) '99년도 400,000천원

5. 검토 의견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 '99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,

충주, 제천, 괴산, 단양군 등 기존 도유림 인근의 사유임야를 매입하려는 계획인 바,

도비를 투자함에 있어 구체적인 위치, 지번별 매입 가격 등을 명기하여 의결을 요청함이 타당하고 또한 지방재정이 어려운 '99년도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